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 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목 차>

1.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단위 및 용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 성 자	이름	이경민
	담당부서 (과)	식품안전 표시인증 과		직급	식품위생주사
	국장	윤형주		연락처	043-719-2864
	과장	오정완		이메일	kml9805@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윤형주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단위 및 용어			
	2.규제조문	[별표 1] 3. 가.			
	3.위임법령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18.6.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의 함량 표시는 1회 제공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며, 이때 1회 제공량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그러나 1회 제공량의 자율설정에 따라 영양정보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발생이 빈번하여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총 내용량당 함량(1포장 또는 100g(ml)당 함량)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8.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을 총 내용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며,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 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음 			
	9.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집단: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의 대상의 영업자 -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자이자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자 ○ 이해관계자 : 소비자단체, 식품 관련 협회 등 			
	10.규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가 자율적으로 1회제공량을 설정할 수 있는데서 발생하였던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막고,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 기대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1.81	0	31.81
		피규제자 이외	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X	○		X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X			
	14.원칙허용·예외금지	(자동입력)			

	규제 방식 적용여부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31.81	0	35.4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p> <p>3. 표시기준 및 방법</p> <p>가. (생 략)</p> <p>1) 영양성분은 그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함량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3의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1회 제공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2의 영양소 기준치표에 따른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p> <p>2)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그 단위는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며 그 양에 대한 중량(g) 또는 용량(ml)을 괄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2회 제공량 이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총 제공 횟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 2조각(00g)/총 8조각, 피자의 1회 제공량 : 1회 제공기준량 150g(1회 제공량 범위 100~299g)에 가까운 조각수)</p> <p><신 설></p> <p><신 설></p>	<p>[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p> <p>3. 표시기준 및 방법</p> <p>가.(현행과 같음)</p> <p>1) ----- 한다.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3]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섭취참고량, 총 내용량(또는 1 포장) 또는 단위 내용량당 등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p> <p>2)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 (또는 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표1]의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ml)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경우에는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내용량(또는 1 포장) 및 단위 제품의 중량(g) 또는 용량(ml)을 표시하고 단위 제품의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p> <p>4) 2)부터 3)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 내용량이 100g(ml)미만이고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내용량(또는 1 포장)당 영양</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은 1회 제공량당 표시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1회 제공량은 일정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업체가 제품별로 1회 제공량을 자율 설정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의도적으로 제품 일부분에 대한 영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오인 발생
 - 영양표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48%는 영양표시 상의 1회 제공량을 총 내용량으로 오인하고 있었음
 - * 영양표시 소비자 인식조사('14.11~'14.12) : 18세 이상 2천명 대상 설문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1회 제공량 줄여 칼로리, 나트륨등 눈속임(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15. 12. 7)
하지만 1회 제공량 자체를 업체 측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어 이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사용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과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30g으로 정해져 있지만 20~59g 범위 내에서 임의로 1회 제공량을 설정할 수 있다. 업체 측은 원료나 제조방식을 바꿔 영양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칼로리나 포화지방이 높은 제품은 1회 제공량을 줄여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1회 제공량' 업체마다 제각각...칼로리 눈속임에 혼란 (JTBC, '15.10.2)
한끼에 150kcal라고 광고하는 시리얼입니다. 1회 제공량을 담아보니 종이컵 두 개도 채우지 못합니다. 다이어트 식품뿐 아니라 대부분 식품의 열량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제품 전체의 열량은 찾아볼 수 없거나,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식약처의 식품 영양표시 기준에 따르면, 과자류의 1회 제공량은 20~60g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권고 사항에 그치다 보니, 제품에 따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체중조절용 제조식품의 경우, 중량이 아닌 칼로리를 기준으로 1회 제공량을 정합니다. 한 끼에 200~400kcal 수준의 칼로리만 제시하면, 그 양이 얼마가 되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업체마다 제각각인 '1회 제공량'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어린이기호식품의 경우 영양성분함량에 따른 색상·표시 및 고영양·저열량 식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도 활용되는데, 이때의 기준을 현행과 같이 1회제공량으로 할 경우 업체가 의도적

으로 1회제공량을 축소할 유인 및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제과업체, '1회 제공량' 쪼개기 열량표시로 규제 회피(매일일보, '15. 1. 21)

제과업체들이 1회 제공량을 임의로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간식 가운데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이면 제재 대상이다. 열량 500kcal, 포화지방 8g 초과 등의 요건을 갖춘 식품도 해당된다. 문제는 제과업체들이 원료나 제조방식 등을 변경해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보다 1회 제공량을 임의로 낮게 책정해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지적했다.

- 한편,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양표시 단위가 현행 '1회 제공량당' 기준에서 '총 내용량당' 기준으로 이미 개정된 바 있어(16) 법령 간 조화를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 기준의 개정이 요구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1회 제공량당 기준으로 영양표시
	내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표시 단위 기준을 1회 제공량당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1회제공량당은 업체가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준에서 67~20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규제대안1	대안명	총 내용량당 기준으로 영양표시(1포장당, 100g(ml)당 영양표시)
	내용	원칙적으로 총 내용량당(1포장당)을 기준으로 하며, 총 내용량이 100g을 초과하고 1회 제공기준량의 3배를 초과하는 대용량 제품의 경우 100g(ml)당 표시 가능
규제대안2	대안명	모든 식품을 100g(ml) 당 표시
	내용	용량에 관계 없이 모든 식품의 용량표시를 100g(ml)를 기준으로 함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	----	----

현행유지안	· 영양표시에 관한 영업자의 자율성이 보장	· 제품 일부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값을 제품 전체에 대한 값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음
규제대안1	·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대용량 제품에 대해서는 100g(ml)당 영양표시도 가능하여 영업자의 자율성도 일부 보장	· 영업자에게 변경된 표시기준 이행에 따른 비용 발생
규제대안2	· 모든 제품을 100g(ml)당 기준으로 표시하게 하여 타 제품과 단순비교가 용이	· 기준 이하의 소용량 제품의 경우 과대표시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33개 업체(롯데리아, 파리크라상 등)	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33개 업체(롯데리아, 파리크라상 등) 대상 간담회 진행,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개정 추진 내용 사전 설명 및 의견청취('18.1.26.)	간담회 개최 결과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행 '1회 제공량당' 영양표시 제도(현행유지안) 운영상에 나타난 소비자 오인 혼동의 문제, 산업체의 규제 회피 문제 등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모든 식품을 영양성분을 100g(ml)당 표시하게 하는 대안(규제대안 2)은 타 제품 및 유사 식품과의 단순비교는 용이하나, 소용량제품의 경우 오히려 과대표시 될 우려가 있음
- 현행의 1회 제공량 기준 대신 총 내용량당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용량제품의 경우 100g(ml) 당 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규제대안 1)이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 규제에 따라 비용이 일부 발생할 것이나 미미한 수준이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바 규제의 도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임
- 또한 이미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일반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기준이 총 내용량당 기준으로 변경된 바, 법령 간 일관성 및 조화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3. 규제목표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영양표시의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 제품에 대한 일부의 정보 제공에 기인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 회피 가능성 감소
 - '총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영양정보 제공 및 영양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기대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소비자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대표적인 국민 보건 정책의 수단이며, 정보제공을 통한 규제는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 유인적인 규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음
- 또한 산업체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의 신설·강화이기 보다는 기존에 이미 적용되고 있던 규제이며, 표시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그 내용을 합리화 하는 것임
- 즉, 본 규제의 적용을 받는 산업체는 이미 영양표시하고 있는 업체이며, 기준 변경에 따라 일부 비용은 소요될 것이나 추가적인 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X	X	○	X	○	X	X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금번 개정사항은 이미 운영되어온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아닌 규제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피규제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100개 이상의 점포 수를 가진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영업자'이며, 기업규모별로 분류할 때 대기업 4곳, 중견기업 7곳, 중소기업 20곳으로 분류할 수 있음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및 비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 그러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00개 이상의 점포수를 가진 가맹사업의 경우 이미 규모화 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본 규제가 중소기업에 특히 부담을 지우는 규제라고 할 수는 없

을 것임

- 또한 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1업소 당 1만원 이내로 미미한 바 규제로 인하여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라 할 수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식품에 대한 정보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의사결정 및 행동을 취하는데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시장유인적 규제 설계방식임

- 국제 기준 정합성

- 주요 국가들은 영양표시를 국민 보건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EU, 일본 등은 총 내용량당 또는 100g(ml)당 영양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불합리한 규제라고 볼 수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 3년 마다 재검토하도록 설정되어 있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총 내용량당 또는 100g(ml)당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표시를 수행중임
- (EU) 열량 및 지방, 탄수화물, 당, 단백질, 식염 등의 함량을 100g(ml)당 으로 표시(1회 제공량 추가 표시 가능)
- (독일) 열량 및 당, 지방, 포화지방산, 섬유질, 나트륨 등에 대하여 100g(ml) 당 함량으로 표시(1인분의 양이 라벨에 정해진 경우 1인분 표시도 가능)
- (일본)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미네랄, 나트륨 등에 대해 100g(ml)당 혹은 1포장당 등 하나의 식품단위당 영양성분 함유량 표시(1인분으로 표시할 경우 그 양(g, ml, 개수) 같이 기재)

o 타법사례

-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등의 영양표시) 장기보존식품, 과자 및 병과, 빵류 및 만두류 등의 식품에 대하여 총 내용량당 혹은 100g(ml)당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기준 개선>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1.81백만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기준 개선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1.81		31.8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1.81		31.81
기업순비용		31.81	연간균등순비용	35.4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영양성분 표시제도의 기준을 합리화 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 부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역시 미미하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짐

○ 규제 차등화 방안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피규제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100개 이상의 점포 수를 가진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100개 이상의 점포수를 가진 가맹사업의 경우 이미 규모화 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1업소 당 2000원 이내로 미미한 바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 수준이 크지 않으므로 규제 차등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행 영양표시제도의 단위 기준을 합리화 하는 것이므로 조직, 인력 등의 추가적인 행정지원 없이도 집행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행 영양표시제도의 단위 기준을 합리화 하는 것이므로 예산 등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집행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8.4.~)

-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비자단체, 협회,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개정(안) 송부하여 홍보 및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 영업자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어린이 기호식품등에 대한 영양표시 제도를 합리화 하는 것으로서,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오인·혼동을 감소시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중요한 사안임
- 규제의 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약 31백만원으로 추정되며, 개별 업소별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약 2000원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됨
- 한편, 총 내용량 당 영양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서 발생될 수 있는 오인 혼동을 줄이고, 소비자가 선호*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1.81		31.8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1.81		31.81
기업순비용		31.81	연간균등순비용	35.4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총 내용량당 기준으로 영양표시(1포장당, 100g(ml)당 영양표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기준 개선
설명	(규제대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100개 이상의 점포 수를 가진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31개 업체 15,909개 영업소 - (제과제빵) (주)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 씨제이푸드빌(주)(뚜레쥬르) 등 - (피자) 한국피자헛(유)(피자헛), 청오디피케이(주)(도미노피자) 등 - (햄버거) (주)롯데리아(롯데리아), (주)비케이알(버거킹) 등 - (아이스크림) 비알코리아(주)(배스킨라빈스), (주)띠아모코리아(카페띠아모) 등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는 메뉴판,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 등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매장에 포스터나 A4 알림판 형태로 게시됨 - 일부 제과제빵분야의 경우 판매되는 물품 앞에 반명함 크기의 카드형태(name tag)로 제시되기도 함 ∘ 배달 영업의 경우 주로 리플릿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때 리플릿은 주기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으로 현재 제작된 리플릿 소진 뒤 새로이 제작할 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 기존 포장지 소진 등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으로써 규제비용 부담을 최소화
세분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시리얼류, 코코아가공품류 생산업체
활동제목	영양표시 알림 포스터/알림판 교체 비용
비용항목	설비
비용	31,818,000
활동비용 특성	일시적
산식	설비비용 [구매비용(원)(2000) X 연간 구매 횟수(1) X 피규제자 수(15909)]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림포스터/알림판 교체비용 = 포스터 제작 평균단가 × 피규제 대상 영업장 수 <p style="text-align: center;"><산출근거></p> <p>1. 알림포스터 제작 평균단가 : 2,000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영양표시 안내판은 포스터 형태 보다는 A4 사이즈의 알림판을 많이 사용하지만, 과소추정의 방지를 위해 가장 큰 단가를 적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제작 전문 업체 견적 결과 장당 1617원* 수준 *A1(594*840mm), 컬러 5도인쇄, 유광코팅, 디자인비 포함, 200부 인쇄시 - 햄버거 업체 M사 인터뷰 결과 장당 133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 - 포스터 제작이 아닌 A4 사이즈로 제작시 1094원 수준 </div> <p>2. 피규제업소 수 : 31개 가맹사업체 15,909개 영업장</p>
--	---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소비자에 정보제공을 통한 합리적 식품 선택 도모 및 신뢰도 상승
분석	소비자에게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제공량당(혹은 100g(ml)당)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고 이해하기 쉬운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소비자 조사 결과 85%가 총 내용량당 표시 선호(`15 소비자조사, 남녀 2000명 대상)

③ 정부 :

비용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표시기준 변경에 대한 홍보
분석	홍보물 제작 및 배포비용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표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생산자, 관련기관, 소비자 등에게 알리는 홍보물 제작비용과 배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